

철강대학원 학생조교장학금 운영세칙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철강대학원 학생조교장학금 운영세칙	철강대학원 <u>학생조교</u> 운영세칙	-용어변경 반영
제 1 조(목적) 본 지침은 철강대학원 (이하 대학원이라 칭함) <u>학생조교 장학금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</u> 으로써 철강분야 우수인력 확보 및 고급인력양성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통하여 연구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	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철강대학원 (이하 대학원이라 한다) <u>학생조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-용어변경 반영 -문장 단순화
제 2 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대학원 석사과정, 박사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.	(현행유지)	
제 3 조(학생조교 임용 및 장학금 지급) 대학원에서는 <u>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한다.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.</u>	제3조(<u>학생조교의 임용</u>) 대학원에서는 <u>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학생을 학생조교로 임용할 수 있다.</u>	-수당에 관한 사항 분리 -총장승인 사항은 펠로우십 해당사항이므로 삭제
	<u>제4조(학생조교수당) 학생조교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되는 학생조교수당을 지급한다.</u> <u>1. 학생교육조교수당(Teaching Assistantship)은 대학원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.</u> <u>2. 학생연구조교수당(Research Assistantship)은 대학원생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.</u> <u>3. 학생행정조교수당(Staff Assistantship)은 대학원생이 행정업무 지원(근로포함)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인건비를 말한다.</u>	-일반대학원 세칙 준용하여 조항 신설
제 4 조(장학금 지급방법) ① 대학원생장학금은 지급재원에 관계없이 과정 별, 학기별로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대학원생장학금은 매월 25 일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공휴일, 국경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.	제 5 조(<u>학생조교수당 지급</u>) ① <u>(삭제)</u> ② <u>학생조교수당은</u> 매월 25 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	-용어변경 반영 -성과기반 RA 정착: 성과에 따라 지급 상이 -용어변경 반영

<p>③ 매 학기초 학기단위로 장학금을 편성하여 지급하되 학기중 자퇴,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할계산 하지 않고 지도교수의 의견에 따라 해당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신설)</p>	<p>③ 학기 중 자퇴,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할계산 하지 않고 지도교수의 의견에 따라 해당 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<u>학생조교수당</u>을 지급할 수 있다. <u>④ 학생연구조교수당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규정을 우선적용하여 지급하되,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운영세칙에 따라 지급한다.</u></p>	<p>-학생 변동사항 발생 시 지급기준 유지 -연구비 지원기관 규정 우선적용 명시</p>
<p>제 5 조(학기별 장학금 지급) ① 석사과정 4 학기, 박사과정 8 학기, 통합과정 12 학기 이내의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며, 석사과정 수업연한 초과자의 장학금은(석사 5 학기부터) 기준금액의 50%를 지급한다. 박사 및 통합과정 수업연한 초과자의 장학금은(박사 9 학기, 통합 13 학기부터)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 6 조(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) ① <u>초과등록자라 함은 석사과정 석사과정 4 학기, 박사과정 8 학기, 통합과정 12 학기를 초과하여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.</u></p>	<p>-펠로우십에 관한 사항 삭제 -GIFT 초과등록학기 기준 유지 -용어 통일: 수업연한 초과자→초과등록자 -학생조교수당과 무관</p>
<p>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침은 입학 당시 적용기준을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다. (신설)</p>	<p>② <u>(삭제)</u> <u>③ 초과등록자의 학생조교수당은 교비로 지원 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</p>	<p>-일반대학원 규정과 통일 (초과등록자가 SA를 학과운영비(교비)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외사항 명시)</p>
<p>제 6 조(장학금 지급의 제한) ① 타 기관으로부터 일정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 각 과정의 위탁생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한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. ③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연구역량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장학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 7 조(장학금 지급의 제한) ① <u>(삭제)</u> ② <u>(삭제)</u> ③ <u>(삭제)</u></p>	<p>-중복수혜 가능 -일반대학원과 통일 -성과기반 RA 정책에 포함</p>

<p>(신설)</p>	<p><u>제8조(학생조교의 기타 재정지원의 수혜)</u> <u>① 대학원생은 학생조교수당을 지급받는 동시에 내·외부로부터 기타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.</u> <u>② 다만,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이 학생조교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외부기관의 재정지원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</u></p>	<p>-재정지원 중복수혜 가능 명시 -기관 재직자 등 원소속기관의 재정지원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경우 명시</p>
<p>제7조(준용) 본 <u>규정</u>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하되,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	<p><u>제9조</u>(준용) 본 <u>세칙</u>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하되,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	